

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26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3. 21.

김석한 의원 등 4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3. 28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4. 9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김원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고성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소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화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안전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· 의결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도록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변경 (안 제4조, 제5조)
- 2)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 축소(안 제5조)
- 3)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임기 ·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삭제 (안 제6조, 제7조)
- 4) 비상설 위원회 회의 소집 방법 변경(안 제10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학교급식법」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17호
 - 예고기간: 2025. 3. 21.(금) ~ 2025. 3. 27.(목) [6일간]
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·운영중인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,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

- (안 제4조 ~ 제5조) 설치 및 기능, 위원회의 구성
 - 고성군 공공급식지원 심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, 위원수 조정 (20명 → 15명) 및 위원회 심의안건 중 일부를 정비함.
- (안 제6조 ~ 제7조, 제10조) 위원의 임기, 위원의 해촉, 위원회 회의 등
 -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안건은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소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,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 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4. 9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